

# 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4. . .  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명확하고 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부를 수정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업무 담당 국장, 예산업무 담당 실장”를 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, 여성업무 담당 국장, 예산 업무 담당 실장”으로 하고,

-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-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## 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명확하고 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업무 담당 국장, 예산업무 담당 실장”을 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, 여성업무 담당 국장, 예산업무 담당 실장”으로 하고,

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구미시의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 <u>「양성평등기본법」</u> 및 <u>「성별영향평가법」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	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<u>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	
<p><u>제3장</u> 양성평등위원회</p>	<p><u>제3장</u> <u>성별영향평가위원회</u></p>	
<p>제19조(설치) 양성평등시책의 수립 및</p>	<p>제19조(설치) <u>시장은 「성별영향평가</u></p>	

시행과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양성평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양성평등정책의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
3. 양성평등복지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
4. 양성평등기금의

법」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0조(기능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2.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
3.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

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
5.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2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위원회 구성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, 여성단체협의회장, 여성업무담당국장

이 위원회 심의·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삭 제>

<삭 제>

제21조(구성) ① ---  
-----  
----- 15  
명 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 여성업무 담당  
국장, 예산업무 담  
당 실장-----  
-----

제21조(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-----  
---- 시의회에서 추  
천하는 의원 2명,  
여성업무 담당 국  
장, 예산업무 담당

으로 하고, 위촉직  
위원은 다음 각 호  
의 어느 하나에 해  
당하는 사람 중에서  
시장이 위촉한다.

1. 양성평등분야에  
전문지식과 풍부  
한 경험을 갖춘  
사람

2. 여성관련분야 및  
양성평등정책개발  
능력이 있는 사람

3. 여성·가족 분야  
및 각계각층 직능  
대표

④ 위원회의 사무를  
처리하기 위하여 간  
사 및 서기 각 1명  
을 두며, 간사는 여  
성정책 소관업무담  
당과장, 서기는 소  
관업무담당주사로

1. 양성평등정책 및  
성별영향평가에  
관한 전문지식과  
경험이 풍부한 사  
람

2. 구미시의회에서  
추천하는 의원 1  
명

3. 그 밖에 성별영  
향평가를 위하여  
필요하다고 인정  
하는 사람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소관업무 담당 과  
장, 서기는 소관업  
무 담당 팀장으---

실장-----

1. (개정안과 같음)

<삭 제>

2. (개정안 제3호와  
같음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한다.

제2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

<삭 제>

제24조(회의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5조(분과위원회)

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26조 ~ 제29조 (생략)

제4장 양성평등기금

제30조(기금의 설치

등) ① 시장은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능력개발,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양성평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

③ -----  
----- 출  
석으로 개의하고, -  
-----  
--.

<삭 제>

제25조 ~ 제28조 (현행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)

제4장 보칙

<삭 제>

③ (개정안과 같음)

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미시의 출연금
2.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31조(기금의 존속 기한)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<삭 제>

제32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<삭 제>

1.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
2. 취약계층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의 지원
3. 여성·가족친화 사업의 지원
4. 제18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
5. 그 밖에 양성평

등 정책추진과 관  
련하여 시장이 필  
요하다고 인정하  
는 사업의 지원

제33조(기금의 운용

관리) ① 기금은 기  
금운용계획에 따라  
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은 시금고에  
이자율이 높은 예금  
으로 예치하여 관리  
하거나 구미시 통합  
재정안정화기금 설  
치 및 운용 조례 제  
3조에 따라 통합재  
정안정화기금에 예  
수·예탁 및 관리할  
수 있다.

③ 기금은 해당연도  
기금의 이자발생 수  
익금과 그 밖의 수  
입금의 범위에서 운  
용하여야 한다.

④ 해당연도 결산  
잉여금은 전액 재적  
립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 34 조 ( 기 금 운 용 계

<삭 제>

획) ① 시장은 회계  
연도마다 기금운용  
계획을 수립하여야  
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 
따른 기금운용계획  
에는 다음 각 호의  
사항을 포함하여야  
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 
지출에 관한 사항

2. 해당연도 사업계  
획 및 자금계획에  
관한 사항

3. 기금재산에 관한  
사항

4. 그 밖에 기금운  
용상 필요하다고  
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수  
립된 기금운용계획  
안은 회계연도 개시  
40일전까지 의회에  
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5 조 ( 회 계 공 무 원 )

<삭 제>

① 기금의 효율적  
운용·관리를 위하  
여 기금운용관과 기  
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소  
관업무담당과장

2. 기금출납원 : 소  
관업무담당주사

② 기금운용관과 기  
금출납원은 기금을  
적정하게 관리하기  
위하여 필요한 대장  
을 비치하고 기금에  
관한 증빙서류를 따  
로 관리하여야 한  
다.

제36조(기금의 결산)

① 시장은 회계연도  
마다 출납폐쇄후 80  
일 이내에 기금의  
결산보고서를 작성  
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작  
성된 기금결산 보고  
서는 다음 회계연도  
5월 10일까지 의회

<삭 제>

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7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5장 보칙

제38조 (생략)

제3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제29조 (현행 제38조와 같음)

<삭 제>